즉시접수	당일접수	대한법률구조공단 (10년)
		wklac.or.kr
제출자		www.kk
총	건	(Control of the Control of the Contr

지역권설정등기신청

, ,		년	월 일		-1 -1	등기관 확인			각종 통	통지	
접 수		제		ই	처 리	인					
	부동산의 표시										
승역지 :											
요역	지 :										
등기원	밀인과	그 연旨	월일			년	월	일	지역	권설정계약	
등 기	의	목 적			지역	후권실	설정				
설 정	의	목 적									
범		위									
E T		약	:								
구분		성 ' 상호-명					두번호 록번호)		주	소 (소 재 :	지)
등 기 의 무 자											
등 기 권 리 자											



등 록 면 허 세	금			원
지 방 교 육 세	금			원
농 어 촌 특 별 세	급			원
세 액 합 계	그			원
	급			원
등 기 신 청 수 수 료	납부번호	:		
	일괄납부	- ;	건	원
Ţ	등기의무자의] 등기필정보	-	
부동산고유번호				
성명(명칭)	일련	번호	비밀번	<u></u> 호
,	첨 부	서 면		
·지역권설정계약서	통	•주민등록표	E초본(또는 등	본) 통
• 등기필증	통	・도면(토지.	의 일부인 경우) 통
• 위임장	통	• 인감증명서।	ナ 본인서명사실	확인서 또는
•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	통	전자본인서	명확인서 발급증	증 통
·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획	ት 인서 통	〈기 타〉		
	년	월 약	일	
위 신청인		<u>(1)</u>	(전화:)
		(1)	(전화:)
(또는)위 대리인			(전화:)
지방법 9	원		귀중	

- 신청서 작성요령 -

- * 1.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
 - 2.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.
 - 3.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

지역권설정등기신청

7)	人	년	월	일	-1	-1 41	등기관 확인	각종 통지
접	宁	제		호]저	리 인		

① 부동산의 표시

승역지 : **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**

대 300m²

요역지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

대 300m²

[등록문서번호: 100번]

	이 상
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	2017년 4월 3일 설정계약
③ 등 기 의 목 적	지역권설정
④ 설정의 목적	통행
⑤ 범 위	동측 50m²
⑥ 특 약	지역권은 요역지상의 소유권과 함께 이전하지 않고 요역지상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지 아 니함
구분 성 명 (상호·명칭)	주민등록번호 (등기용등록번호) 주 소 (소 재 지)
⑦ 등 기 의 무 자	700101-12345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20(서초동)
8 등 기 권 리 자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801231-1234567 10, 가동 101호(서초동, 샛별아피 트)



⑨ 등 록 면 허 세		그	200,000 원				
⑨ 지 방 교 육 세		그	40,000 원				
⑨ 농 어 촌 특 별 세		금	원				
① 세 액 합 계		금	240,000 원				
		그	15,000원				
① 등기신청수수료	납부번호	: 12-12-12	345678-0				
	일괄납부	-: 건	원				
②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							
부동산고유번호		1102-2006-002095					
성명(명칭)	일련	일련번호 비밀번호					
이대백	A77C-LC)71-35J5	40-4636				
13 첨 부 서 면							
·지역권설정계약서	1 통	·주민등록표초본(또는 등본) 1 통					
· 등기필증	통	·도면(토지의 일부인 경우) 1 통					
• 위임장	통	·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					
•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	1 통	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					
·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	확인서 1 통	〈기 타〉					

삭2행

2017년 5월 26일

④ 위 신청인 이 대 백 ① (전화: 010-1234-5678)

김 갑 동 ① (전화: **010-5678-1234**) (또는)위 대리인 (전화:)

서울중앙 지방법원 등기국 귀중

- 신청서 작성요령 -

- * 1.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
 - 2.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.
 - 3.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

등기신청안내서 - 지역권설정등기신청

■ 지역권설정등기란

요역지를 위하여 통행사용을 위한 설정계약으로 인하여 등기권리자(지역권자, 요역지소 유자)와 등기의무자(지역권설정자, 승역지의 소유자)가 공동으로 지역권설정등기를 승역 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는 경우입니다.

■ 등기신청방법

① 공동신청

지역권설정계약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지역권설정자와 지역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.

② 단독신청

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

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.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,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(業)으로 할 수 없습니다.

■ 등기신청서 기재요령

※ 신청서는 창극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. 부동산의 표시간이나 신청인간 등이 부족항 경우에는 벽지륵 사용하고, 벽지륵 포함한 신청서의 각 강 사이에는 간인(신청 서에 서명은 하였은 때에는 각 강마다 연결되는 서명)은 하여야 합니다.

① 부동산의 표시란

지역권의 목적부동산을 승역지와 요역지의 표시를 기재하되, 등기기록상 부동산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. 토지(임야)의 표시방법은 토지의 소재, 지번, 지목, 면적을 기재합니다.

② 둥기원인과 그 연월일란

등기원인은 "설정계약"으로, 연월일은 지역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을 기재합니다.



③ 둥기의 목적란

"지역권설정" 이라고 기재합니다.

④ 설정의 목적란

승역지가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되는 종류를 기재합니다. 통행을 위한 경우에는 "통행"이라고 기재하며, 기타 "용수사용", "송유관시설유지" 등이 있습니다.

⑤ 범위란

범위는 승역지가 1필의 토지의 전부인가 또는 일부인가를 표시합니다. 1필의 토지의 일부인 때에는 이를 특정할 수 있도록 위치와 면적으로 표시합니다. 요역지는 1필의 토지의 전부이어야 합니다.

⑥ 특약라

신청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, 지역권이 승역지 소유권의 처분에 수반하지 않는 다는 특약, 용수지역권에 있어서 그 사용방법에 관한 특약,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의 설치, 수선의 의무를 승역지 소유자가 부담한다는 특약 등을 기재합니다(부동산등기법 제137조).

⑦ 둥기의무자란

지역권설정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기재하되, 등기기록상 소유자 표시와 일 치하여야 합니다. 그러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, 본점(주사무소 소재 지),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,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 단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, 본점(주사무소 소재지),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(관리 인)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.

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와 현재의 주소와 다른 경우, 등기명의인표시변경(또는 경정)등기를 신청하여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변경한 후 설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.

⑧ 둥기권리자란

지역권자를 기재하는 란으로,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.

⑨ 등록면허세·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란

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하며,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액이 없는 경우 기 재하지 않습니다.

10 세액합계란

등록면허세액, 지방교육세액,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.

① 등기신청수수료란

⑦ 부동산 1개당 15,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,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, 전자납부,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



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.

①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 료,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,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 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(일괄납부는 은 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).

①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

- ②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'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(정중앙에 보안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음)'를 교부받은 경우, 그 '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'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, 성명, 일련번호, 비밀번호를 각 기재하고 '등기 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'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. 또한 이미 사용했던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을 유의(다만, 50개의 비밀번호를 모두 사용한 경우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재사용이 가능)하시기 바랍니다.
- ①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'등기필증(접수인과 등기필인 날인되어 있음)'을 교부받은 경우, 그 '등기필증'을 제출하여야 하며,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© 교부받은 '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'나 '등기필증'을 멸실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,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.

① 첨부서면란

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.

₩ 신청인등란

- ⑦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,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,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(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경우에도 서명)을 합니다. 그러나 신청인이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와 대표자(관리인)의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,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대표자의 인감,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(관리인)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(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제출할 경우에도 서명)을 합니다.
- ①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.



■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

< 신청인 >

① 위임장

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.

② 지역권설정계약서

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합니다.

③ 둥기필증

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취득시 등기소로 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합니다. 단, 소유권 취득의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 정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, 성 명, 일련번호, 비밀번호를 각 기재(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)함으로써 등기필증 첨부에 갈음합니다.

다만, 등기필증(등기필정보)을 멸실하여 첨부(기재)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.

④ 도면(지적도)

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합니다. 도면은 인터넷 등기소 영구보존문서 등록에서 도면을 전자문서로 변환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전자서명을 부여하여 등록하고, 부여된 등록문서번호를 신청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기재(예:[등록문서번호:100번])하는 방법으로 제출합니다. 단,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신청을 직접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< 시·구·군청, 읍·면 사무소, 동 주민센터 >

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

시장, 구청장,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(OCR용지)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,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고 출력한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.

②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

소유자인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(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)를 첨부하거나, 인감증명



을 갈음하여 『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.

③ 주민등록표초본(또는 등본)

지역권자의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(각,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)을 첨부합니다.

<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, 금융기관 등 >

둥기신청수수료

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(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)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(신용카드, 계좌이체, 선불형지급수단)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 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,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 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를 첨부합니다.

く 등기과 · 소 >

① 법인등기사항전부(일부)증명서

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(각,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)를 첨부합니다.

< 기 타 >

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, "대법원 종합법률정보 (http://glaw.scourt.go.kr)"의 규칙/예규/선례에서 『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, 등기예규 제1568호』및 『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, 등기예규 제1435호』등을 참고하시고,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, 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나 등기과・소의 민원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

신청서,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,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, 위임장,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, 주민등록표초(등)본, 도면, 지역 권설정계약서,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.